

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'도'라 한다)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기능을 담당할 충북개발연구원(이하 '연구원'이라 한다)의 설립과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립운영) 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동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연구원의 설립·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지방행정제도개선,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
3.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
4. 국내외 자본유치, 통상협력 확대의 연구 및 자문
5. 지방행정과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배포
6.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·협력과 해외자료와의 비교·연구
7. 출연기관 및 타 기관·단체의 연구의뢰 사업
8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
9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 (기금)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(이하 '기금'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각 시·군(이하 '지방자치단체'라 한다)과 그외의 출연금,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립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 (출연금)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 (운영경비)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과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7조 (공유재산의 대부)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.

제8조 (연구과제부여)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(연구조사위탁) ①기금출연자와 각급 기관·단체, 개인은 연구원에 연구·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원이 정하는 소정의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·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·단체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 (자료의 제공) ①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립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지방행정과 관련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11조 (사업계획 등 승인)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'도지사'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2조 (결산서 제출)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·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비밀준수)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4조 (육성 및 감독) ① 도지사는 연구원을 지원·육성 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
도지사는 연구원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
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연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원장에게
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 (공무원의 파견) ①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
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
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
아니한다.

제16조 (운영규정)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
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7조 (준용) 연구원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
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8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② (경과조치) '1990. 5. 30 기설립 동기한 충북개발연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
것으로 본다.